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1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4
나. 별도 이행입법의 필요성 등	7
다.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2
라. 이행정보조회시스템 개요 및 운영 구조	14
마. 종합 검토의견	18
바. 관계기관 의견	23
2. 조문별 검토	24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4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29
다. 이행정보의 제공 범위(안 제5조)	31
라.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안 제7조·제8조)	36

마. 정보 제공 절차 등(안 제9조·제12조)	39
바. 위험인물 정보 제공 특례(안 제10조)	45
사. 이행정보 처리의 기록·보존 등(안 제13조~제15조)	49
아. 안 제17조의 신설 필요성 및 협조 의무 규정의 중복성 검토(안 제6조 제2항 및 제17조)	54
자. 협정 이행 관련 보충규정(안 제18조)	57
차. 벌칙 조항(안 제20조)	5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상식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04. 06.
3. 회부연월일 : 2026. 04. 07.

II. 제안이유

우리 정부는 2008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회는 2008년 12월 13일에 비준 동의하였음. 해당 협정은 지문자동조회시스템 구축을 통한 범죄 정보 교환을 골자로 하나, 양국의 법체계 차이 및 상호주의 적용 문제 등으로 이행이 지연되어 왔음.

최근 한미 양국이 정보교환 범위에 합의하고, 미국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VWP 지위 유지를 위해 협정의 신속한 이행이 요구됨에 따라, 이 법률 제정을 통하여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익 증진을 조화롭게 도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이행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처를 도모하는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성명, 지문, 범죄경력자료 등을 ‘이행정보’로 정의하고, 한국의 경찰청장과 미국의 FBI 국장을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담당자로 지정함(안 제2조).
- 다. 이 법은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 라. 이행정보의 제공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로 한정하고, 경찰청장이 관련 이행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이행정보의 실시간 정보 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등록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테러 계획·참여자 및 강력범죄단체 구성원 등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 경찰청장은 수사 저해, 국가안보 위협, 제3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거나 상대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이행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이행정보의 처리 상황 기록·보존,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 및 목적 달성 시 정보의 즉각 파기 의무를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상호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국가담당자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직무상 알게 된 이행정보를 유출·변조 등을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I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입법 취지

제정안은 한·미 간 2008년 체결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이하 “PCSC 협정¹⁾”)의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범위, 절차 및 통제체계를 규정하려는 것임.

당시 미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²⁾ 가입 요건의 하나로 테러 대응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범죄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PCSC 협정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협정 체결 이후에도 양국 간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차이, 정보 제공 범위 및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협정은 장기간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VWP 유지와 관련하여 협정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최근 초국경 범죄, 국제 테러 및 불법

1) <韓美 간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

▶ 약어는 ‘PCSC(Preventing and Combating Serious Crime) 협정’

▶ 체결: '08. 11. 7. ▶ 국회 비준 동의: '08. 12. 13. ▶ 발효: '08. 12. 29.

2)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은 가입국 국민이 최대 90일간 관광 또는 상용(Business) 목적으로 전자여행허가(ESTA)만으로 미국에 무비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VWP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2011년 5월, 2013년 4월, 2015년 6월, 2020년 12월, 2023년 4월 및 2025년 11월까지 총 6차례 자격을 갱신하였음. VWP 자격은 통상 2년 주기로 갱신되나 미국 측 심사 일정에 따라 갱신 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또한 갱신 다음 해에는 차기 갱신을 위한 미국 측 요구사항이 통보되며, 통상 회의 개최 또는 서면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되며, 2025년 11월 갱신에 따른 차기 갱신 협의는 올해 말경 이루어질 예정이라 함.

이민 등에 대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협정 이행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한편 PCSC 협정은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중대범죄와 관련하여 양국이 범죄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협정의 적용 대상 범죄는 살인, 인신매매, 성범죄, 테러범죄, 무기범죄, 마약범죄, 방화 등 중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관련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음.³⁾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는 크게 지문정보, 개인 식별정보, 범죄경력자료 및 범죄사실 정보로 구분될 수 있으며, 현재 양국 간 협의된 정보교환 구조는 다음과 같음.

3) <PCSC 협정 부속서>

이 협정의 목적 상 공개될 범죄는, 법령에 따라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 또는 미수 행위를 포함한다.

1. 사람에 대한 중대범죄

- 집단살해, 고문, 살인, 치사 및 이와 연관된 범죄, 인신매매, 강간 및 그 밖의 성범죄, 외국인 밀입국, 채무노예, 노예소유, 강제노력, 어린이에 대한 범죄, 유괴 또는 불법감금, 인질강도, 가정폭력, 성매매 그리고 종교자유의 침해

2. 국가에 대한 중대범죄

- 테러행위 및 이와 연관된 범죄,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리스트 조직에의 물질적 원조, 테러위협, 파괴행위, 반역 및 내란, 간첩활동, 공무집행방해, 무기거래 및 사법방해

3. 중대무기범죄

- 총기류 범죄(밀매를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파괴장치 또는 폭발물질과 관련된 범죄

4. 절도/사기와 관련된 중대범죄

- 주거침입강도, 금품강요, 위증, 자금세탁, 부정수표 유통, 강도, 무장강도 및 위조

5. 통제물질과 관련된 중대범죄

6. 재산에 대한 중대범죄

- 방화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포함된 다음범죄들의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폭행, 상해, 협박, 주거침입, 뇌물, 횡령, 공갈, 사기관련 범죄(위조, 위조문서의 행사, 우편 사기, 신용카드 및 여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문서의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사용), 탈세, 절도 및 재물손괴

< PCSC 협정 이행을 위한 정보공유의 내용 및 범위 >

- ① 지문정보(십지)
- ②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③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을 받은 범죄경력자료 중 가장 중하게 처벌받은 1건
- ④ ③에서 조회된 사건의 구체적 사실 정보(범죄사실)

이와 같이 PCSC 협정은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범죄경력 및 형사사법정보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바,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정보 제공 범위, 절차 및 통제 체계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제정안은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행정보의 범위 및 제공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정보 제공의 제한, 기록·보존, 안전성 확보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정보의 국제적 공유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또한 협정상 정보교환 체계를 국내 법질서에 적합한 형태로 구체화하여 정보 제공의 적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별도 이행입법의 필요성 등

PCSC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효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4)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2025년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정 이행 요구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또는 기존 법률 체계를 활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임.

먼저 기존 법률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1월 제8조의4를 신설하여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같은 조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의 기준·범위·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⁵⁾

이에 따라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26년 6월 30일 제정되어 2026년

4)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6.] [시행일: 2026. 7. 7.]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범죄경력자료 및 신체인식정보 등을 국외 이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명시⁶⁾하면서(제5조제3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범위·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결국 지문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령상의 근거만으로 PCSC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교환 체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첫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는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PCSC 협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문정보의 자동조회,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국가담당자에 의한 정보교환 등 구체적인 정보교환 체계 전반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둘째, 범죄경력자료 및 형사사법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범죄경력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가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⁷⁾하고 있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은

6) 제5조(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사진
2.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정보 및 소재·출입국 관련 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민감정보 중 유전정보(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범죄경력자료, 신체인식정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 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⁸⁾.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PCSC 협정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회보 및 형사사법정보의 수집·저장·이용이 각각 현행 법률에서 정한 범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⁹⁾

셋째, PCSC 협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지문정보의 자동조회, 국가담당자에 의한 정보교환, 정보 처리의 제한, 정보의 수정·차단·삭제, 문서화 및 정보보안 등 정보교환 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및 그 하위법령만으로는 협정에 따른 이행정보의 제공 범위와 절차,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 처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7)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범죄경력을 조회·회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조제1항제10호).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9. (생략)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8) 형사사법업무 처리 이외 목적으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제6조제3항)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는 범죄경력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가 가능한 경우로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PCSC 협정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회보를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조회·회보를 허용하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또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PCSC 협정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국외로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동 규정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종합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제정안은 PCSC 협정상의 정보교환 체계를 국내법에 구체화하고, 이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의 구축·운영, 이 행정정보의 제공 범위 및 제한, 국가 담당자에 의한 정보교환, 기록·보존, 안전성 확보 및 누설 금지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특히 기존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의 조회·회보 및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는 별도로 협정에 따른 정보교환의 대상·절차 및 관리체계를 구체화하려는 데 제정안의 입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및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근거·기준·범위·절차 및 보안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별도의 특별법 제정만이 PCSC 협정 이행을 위한 유일한 입법방식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¹⁰⁾ 기존 법률의 개정 또는 관련 법령 간의 관계를 정비하는 방법으로도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임.

10) 법무부는 2025년 검토의견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두 제시하였으며, 전자의 경우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따라서 PCSC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과 기존 법률 체계를 정비·활용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협정의 취지와 국내 법체계에 보다 부합하는지는 입법정책적 판단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음.¹¹⁾

11) 경찰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테러행위를 포함한 범죄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수사자료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회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법제처 행정법제국-1488, 2008. 10. 20.).

다.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본칙 2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 및 제2조는 협정의 이행 목적과 이행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경찰청장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국가담당자로 지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3조 및 제4조는 다른 법률 및 협정과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제정안의 적용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음.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행정보의 제공 범위, 수집·관리, 정보 조회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행위 등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정보 제공 제한 사유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이행정보 처리의 기록·보존, 안전성 확보, 누설 금지 및 협의기구 설치 등 정보 관리 및 협정 운영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국가기관 등의 협조,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제정안은 정보의 수집·연계·제공 및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한 정보 제공 절차를 넘어 범죄정보 및 민감정보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별도의 법률 체계를 마련하려는 입법으로 볼 수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

조 문	주요 내용
제1조	한·미 PCSC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양국 간 정보교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
제2조	이행정보, 국가담당자, 이행정보조회시스템, 범죄경력자료, 형사사법정보 등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제3조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사항 등 법률 간 관계를 규정
제4조	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및 협정 이행 원칙을 규정
제5조	상대국에 제공할 수 있는 이행정보의 범위를 규정(인적사항, 지문정보, 범죄경력자료 및 형사사법정보 등)
제6조	협정 이행에 필요한 이행정보의 수집·관리 및 처리 근거를 마련
제7조	양국 간 정보교환을 위한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규정
제8조	범죄경력자료 등 관련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
제9조	상대국 요청에 따른 이행정보 제공 절차 및 추가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
제10조	테러행위 등 위험인물에 관한 이행정보를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제11조	우리나라 국가담당자가 상대국에 이행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
제12조	국가안전보장, 형사절차 보호, 제3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정보 제공 제한 사유를 규정
제13조	정보 제공·조회·공유 내역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규정
제14조	이행정보의 암호화,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규정
제15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이행정보의 누설·목적 외 사용 등을 금지
제16조	협정 이행 과정의 운영·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
제17조	협정 이행을 위한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
제18조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9조	위탁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
제2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
제21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 개정사항 등을 규정

라.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 개요 및 운영 구조

경찰청이 구축 예정인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은 PCSC 협정의 이행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양국이 보유한 지문정보 및 관련 참고정보를 연계하여 대상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범죄경력 자료 등 추가 정보의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교환 체계임.

동 시스템은 우리 경찰청의 지문·범죄경력관리시스템(FCMS)¹²⁾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차세대 신원확인시스템(NGI)¹³⁾을 보안성이 확보된 가상사설망(VPN)¹⁴⁾을 통해 연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의 정보교환 방식에 비하여 보다 신속하게 이행정정보를 조회·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임.

또한 동 시스템은 정보의 민감도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정보 제공 범위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음.

12) 지문·범죄경력관리시스템(FCMS, Fingerprint & Criminal History Management System)은 경찰청이 지문정보와 범죄경력 관련 기초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임.

13) 차세대 신원확인시스템(NGI: Next Generation Identification)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기존 지문 기반 신원확인체계를 대체하기 위하여 구축한 다중 생체인식 시스템임. 동 시스템은 지문뿐만 아니라 얼굴인식, 홍채, 음성, 손바닥 지문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신원을 식별하는 체계로서, 2014년부터 안면인식 기능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범죄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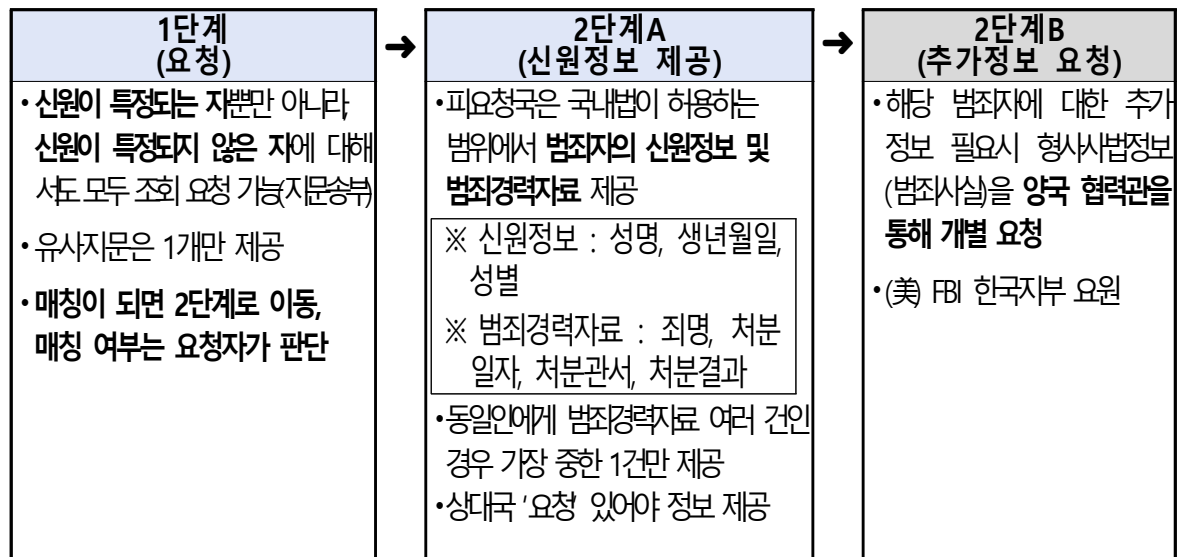
14) VPN(가상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은 공용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통신 경로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사용자의 IP 주소 등을 은닉하여 온라인상의 보안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술임.

< 이행정보조회시스템 개요 >

- (공유 정보) 협정 부속서상 중대범죄 유형 중 장기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대상자에 대해, 아래 4가지 정보를 공유함

단계	공유정보	공유방법
1단계	① 지문정보	지문자동조회 시스템
2단계A	②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정보 ③ 사형, 무기,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을 받은 범죄경력정보 (가장 중하게 처벌받은 1건만)	
2단계B	④ 해당 범죄자 관련 모든 정보(범죄사실 포함)	양국 협력관

- (공유 절차) 양국 시스템을 보안이 확보된 가상사설망으로 연결, 1단계(요청) → 2단계A(신원정보 제공) → 2단계B(추가 정보 요청)로 진행



※ 자료: 경찰청

우선 동 시스템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협정 부속서상 중대범죄 유형 중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정보에 한정됨을 전제로 함.¹⁵⁾

15)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한민국

먼저 1단계에서는 지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는 지문 정보만이 공유됨. 요청국은 개별 참조번호가 부여된 지문 정보를 송부하여 조회를 요청하고, 피요청국은 이를 자국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으로 대조하여 일치 가능성 여부를 회신하게 됨. 이후 최종적인 동일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요청국이 수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¹⁶⁾.

이 단계에서는 성명 등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지문 정보만을 기반으로 확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음. 또한 지문 식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지문은 1개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정보 제공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이는 지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음으로 2단계는 1단계에서 지문 정보 간의 일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추가 정보 제공 절차로서, 2단계A와 2단계B로 구분됨.

국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로서, 해당 민감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범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수사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PCSC 협정에서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음.

- 16) 예를 들어 미국에서 불상의 한국인이 마약소지 혐의로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우,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문조회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인물의 십지지문을 한국 경찰청에 전송하게 됨. 한국 경찰청은 이를 국내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가장 유사한 대상자의 십지지문을 FBI에 회신하고, FBI는 내부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쳐 동일인 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됨. 이후 동일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협정 및 국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인물의 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및 관련 범죄사실 정보 등이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

먼저 2단계A에서는 요청국의 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대상자의 신원정보 및 범죄경력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는 성명·생년월일·성별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죄명·처분일자·처분기관·처분관서·처분결과 등 범죄경력자료가 공유됨. 또한 동일인에게 범죄경력자료가 여러 건인 경우에도 가장 중하게 처벌받은 1건만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한편 2단계B에서는 해당 범죄자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범죄사실 등 형사사법정보가 제공되며, 이는 시스템을 통한 제공이 아니라 양국 협력관을 통한 개별 요청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은 초기 단계에서는 지문 정보만을 활용하여 조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문 정보 간의 일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신원정보 및 범죄경력자료를 제공하며, 범죄사실 등 형사사법정보는 양국 협력관을 통한 개별 요청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보의 성격과 제공 단계에 따라 제공 범위와 방식을 구분하고 있음. 이는 이행정정보의 제공 범위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정보교환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로 볼 수 있음.

마. 종합 검토의견

제정안은 2008년 체결되어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지위의 안정적 유지와 초국경 범죄에 대한 한·미 양국 간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그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특히 제정안은 협정에 따른 지문정보의 자동 조회를 위한 이행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문정보의 조회 결과에 따라 신원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추가적인 형사사법정보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정보교환 방식을 전산화하고 범죄정보의 국제적 공유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이행정보의 제공 범위를 협정 부속서상 중대범죄 및 일정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정보로 한정하고, 지문 정보 → 신원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 추가적인 형사사법정보의 순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보의 성격과 제공 단계에 따라 제공 범위와 방식을 구분하고 있음.

아울러 제정안은 범죄경력자료 및 형사사법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 현행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정보조회

시스템의 구축·운영, 이행정보의 제공 범위 및 제한,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및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일정한 법적 근거와 기준·범위·절차 및 보안대책 등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협정 이행을 위한 유일한 입법방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제정안의 정보 제공 범위와 조회 단계의 통제는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제공 가능한 이행정보를 일정한 중대 범죄 및 대상자에 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으나, 상대국이 어떠한 대상자에 대하여 이행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와 조회가 허용되는 목적 및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조회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회 대상자의 범위와 조회가 허용되는 목적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담당자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 및 통제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담당자가 경찰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이행정보의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담당자가 어떠한 범위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기준과 경찰청장에 대한 보고

및 사후 점검 등 권한 위임에 따른 통제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외국 정부 기관과 이행정정보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시스템 연계 범위, 접근권한 관리, 이용기록의 보관·점검, 정보 유출 방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행정정보가 범죄경력자료 및 형사사법정보 등 민감성이 높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제공 단계뿐만 아니라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의 접근·이용 및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과정에서도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국외로 이전된 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이행정정보를 취급하거나 알게 된 사람의 누설·위조·변조·훼손 또는 공개를 금지하는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열람, 정정·삭제 요구 및 그에 따른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반면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¹⁷⁾하고 있음.

17)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개인

제정안 제3조는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대통령령상의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가 제정안에 따른 이행정보의 제공 및 처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제정안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이행정보의 특성상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사실의 통지, 열람, 정정·삭제 요구 및 그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제정안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제정안은 PCSC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교환 체계를 국내 법률에 구체화하고 이행정보의 제공·조회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및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일정한 법적 근거와 기준·범위·절차 등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특별법 제정 자체의 필요성은 기존 법률 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보 제공 범위와 조회 대상의 범위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국가 담당자에 대한 권한 위임 및 통제 절차,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의 연계·운영에 따른 정보보호, 국외 이전 이후 정보의 이용·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에 대해서는 제정안 및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국외 이전의 중지 및 이전된 개인정보의 삭제·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협정의 원활한 이행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이행정보의 조회·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바. 관계기관 의견

1)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는 안 제14조와 관련하여, ‘이행정보’의 대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제정안에서 별도의 특수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¹⁸⁾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체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외교부

금번 PCSC 협정 이행 특별법안은 이미 2008년에 체결·발효된 협정의 이행을 위한 것인바, 외교부 역시 조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8)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안 제1조 및 제2조는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행정보 및 국가담당자 등 법률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이행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정”이란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에 2008년 11월 7일 체결되어 2008년 12월 29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말하며 그 부속서를 포함한다.
2. “이행정보”란 협정 이행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대상자의 신원 및 범죄 경력 확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 인적사항
 - 나. 지문(指紋) 정보
 - 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미합중국을 말한다.
4. “국가담당자”란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 정 안
가.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나. 상대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국장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안 제1조는 한·미 간 체결된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바, 협정에 따른 정보교환 체계를 국내 법체계에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본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특히 동 협정은 지문정보를 활용한 자동조회 및 단계적 정보교환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보의 수집·조회·제공 및 관리에 관한 절차적 기준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2조는 ‘이행정보’를 인적사항, 지문정보, 범죄경력자료 및 형사사법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지문정보를 활용한 동일인 확인을 시작으로 신원정보, 범죄경력자료 및 추가 형사사법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협정의 정보교환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지문정보를 우선적으로 대조한 후 일치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초기 단계의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정보 제공 범위를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려는 취지가 고려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은 국외로 이전되는 범죄경력자료 및 형사사법정보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범죄경력자료 및 형사사법정보는 개인의 범죄전력 및 형사절차 진행 경과와 관련된 정보로서 지문정보 및 인적사항과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을 고도로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며, 어떠한 정보가 국외 이전의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제한 범위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 정보 제공 대상 및 범위가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과의 관계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행정보의 범위 중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핵심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은 제2조제4호에서 ‘국가담당자’를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상대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BI) 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협정 제7조에서 정보교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이 하나 이상의 국가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제정안 전반에서는 동일한 실질적 주체에 대하여 사무의 성격에 따라 ‘경찰청장’과 ‘국가담당자¹⁹⁾’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원적

19) 참고로 협정 제7조에서 국가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정 제7조(국가 담당자들)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용어 정의의 사용현황 >

구 분	주요 사용 조문	성격 및 특징
경찰청장	제6조(수집), 제7조(시스템 구축), 제8조(연계), 제12조(제공 제한), 제13조(기록), 제14조(보안), 제16조(협의기구), 제17조(협조 요청)	내부적·관리적 집행 주체: 국내법상 권한 행사와 시스템 관리, 보안 조치 등 행정적 사무의 주체로 명시됨
국가담당자	제9조(정보 제공), 제10조(위험인물 공유), 제11조(정보 요청)	외부적·상대적 협력 주체: 한·미 양국 간의 정보 교환 및 협정 이행과 직접 관련된 대외적 창구로서의 역할에 집중됨

구체적으로, 제6조·제7조·제8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 및 제17조 등에서는 ‘경찰청장’을 내부적·관리적 집행 주체로 규정하여 정보의 수집, 시스템 구축 및 연계, 보안조치 등 국내 행정사무의 수행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국가담당자’를 사용하여 한·미 양국 간 정보 제공, 정보 요청 및 위험인물 공유 등 협정 이행과 직접 관련된 대외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설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사무의 성격에 따라 용어를 구분한 것은 내부 행정작용과 대외 협력작용을 기능적으로 분리하려는 입법기술로서 일정 부분

-
1. 제4조와 제5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정보교환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담당자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자의 권한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규율된다.
 2.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조화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사국 간 실무급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진다.
 3. 당사국은 이 협정의 다음 사항들의 이행에 관하여 협의한다.
 - 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조화에 대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세부사항, 그리고
 - 나. 부속서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 공개될 범죄의 특정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음. 특히 ‘국가담당자’를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국제 공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속성과 실무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안 제3조는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법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협정 이행을 위한 특별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는 협정에 따른 정보교환이 기존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로 인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정보 획득 및 공유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제정안은 경찰청장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국가담당자로 지정하여 행정기관 간 직접적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외교부 및 법무부 등 중앙기관을 통한 공조요청 및 심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의 전통적인 사법공조 체계와는 구별되는 행정적 협력 방식으로 볼 수 있음. 이는 국제범죄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음.

또한 안 제3조는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적용 관계를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이는 협정 이행이라는 특정 목적 범위 내에서 기존 법률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보교환 체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다만 안 제3조에 따른 우선 적용은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로 한정되어 있는바, 이는 제정안이 모든 국제적 정보교환 또는 형사사법 공조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협정에서 예정한 정보교환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협정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수사공조, 증거수집 또는 형사 절차상 협력은 여전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통제를 거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제정안이 우선 적용되는 범위 역시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만큼, 안 제3조에 따른 우선 적용의 범위를 해석·운영함에 있어서도 협정의 목적과 내용 및 개별 법률의 규정 취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이행정보의 제공 범위(안 제5조)

안 제5조는 협정에 따른 정보교환 대상 범죄 및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대국에 제공될 수 있는 이행정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5조(이행정보의 제공 범위) ① 상대국에 제공될 수 있는 이행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정보로 한정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방화에 관한 범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유가증권에 관한 범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1장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된 죄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제 정 안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7. 「부정수표 단속법」에 규정된 죄
 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2. 「여권법」에 규정된 죄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에 규정된 죄
 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5.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 및 제95조에 규정된 죄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9.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죄
 20.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에는 그 범죄의 예비·음모 또는 미수범을 포함한다.

안 제5조는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정보교환 대상 범죄를 국내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정보 제공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구체적으로 안 제5조제1항은 상대국에 제공될 수 있는 이행정보의 대상을 협정 부속서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²⁰⁾,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범죄의 예비·음모 또는 미수범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은 내란·외환·살인·성폭력·테러·마약범죄 등 중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그 실행 이전 단계의 범죄까지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이라는 협정의 목적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예비·음모 또는 미수범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의 대상자까지 제5조에 따른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2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로서, 해당 민감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범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수사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대통령령과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PCSC 협정은 정보 교환 대상 범죄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 협정 부속서 및 제정안 제5조에 따른 중대범죄의 유형별 분류 >

협정 부속서(각 호)	법률안 제5조(각 호)
1. 사람에 대한 중대범죄	△ 제1호(형법) △ 제2호(가정폭력·아동학대) △ 제5호(국제형사재판소법) △ 제10호(성폭력·청소년성보호) △ 제11호(성매매) △ 제15호 일부(출입국) △ 제18호(폭처법)
2. 국가에 대한 중대범죄	△ 제1호 일부(형법) △ 제3호(테러자금) △ 제4호(테러방지법) △ 제9호(해상안전) △ 제19호(항공보안) △ 제20호(항공안전)
3. 중대무기범죄	△ 제9호 일부(선박법) △ 제13호(방사능방재법) △ 제14호(총포도검법) △ 제19호 일부(항공보안)
4. 절도/사기에 관련된 중대범죄	△ 제1호 일부(형법) △ 제7호(부정수표) △ 제8호(범죄수익은닉) △ 제12호(여권법) △ 제15호 일부(출입국)
5. 통제물질과 관련된 중대범죄	△ 제6호(마약류관리법)
6. 재산에 대한 중대범죄	△ 제1호 일부(형법: 방화)

이와 같이 제정안은 협정상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범죄 및 대상자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며, 제공 대상 범죄와 대상자를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정보교환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입법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제한이 곧바로 조회 대상의 범위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안 제5조는 실제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상대국이 어떠한 대상자에 대하여 이행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나 조회가 허용되는 목적 및 요건에 대해서는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음.

특히 안 제5조는 협정상 제공될 수 있는 범죄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일 뿐, 조회 단계에서 상대국이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안 제5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일정 범위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조회 단계에서는 그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이 잠재적 조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결국 정보 제공 범위에 대한 제한과 조회 단계에서의 통제는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협정 제4조제2항²¹⁾에 따른 조회 권한의 행사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제한이 안 제12조(정보 제공의 제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는 안 제12조의 검토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21) ▶ 협정 제4조(지문 정보의 자동 조회)

1. 생략
2. 조회 권한은 오직 개별 사안과 당사국의 국내법에 합치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조회 권한은 오직 형사 사법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추가 정보가 요구되는 개인이 심층 조사를 위하여 인식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국경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라.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안 제7조·제8조)

안 제7조 및 제8조는 협정에 따른 이행정정보의 신청·조회 및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7조(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협정에 따라 상대국과 이행정정보의 신청, 조회 및 교환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이행정정보를 수집·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상대국 국가담당자와 협의하여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과 상대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의 이행정정보 교환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성능, 호환성, 상호운영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보안 및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경찰청장은 이행정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과 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3. 그 밖에 이행정정보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연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는 경찰청장이 협정에 따른 이행정보의 신청·조회 및 교환을 실시함으로써 지원하기 위하여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상대국 시스템과의 성능,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안 및 정보보호 수준 향상, 세부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은 협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문정보 기반 조회 체계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양국이 보유한 지문정보를 상호 대조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²²⁾²³⁾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안 제7조의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은 협정상 지문 기반 조회 및 단계적 정보교환 구조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음.

한편 안 제8조는 이행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이행정보조회 시스템과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협정에 따른 정보 조회 및 제공 과정에서 대상자의 동일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22) ▶ 협정 제3조(지문 정보)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범죄 행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국가 자동 지문 확인 시스템용 파일로부터 참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 정보는 지문 정보와 참조 사항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23) ▶ 협정 제4조(지문 정보의 자동 조회)

1.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제7조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담당자들이 지문정보를 비교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자동 조회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제3조에 언급된 참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조회 권한은 오직 개별 사안과 당사국의 국내법에 합치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조회 권한은 오직 형사 사법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추가 정보가 요구되는 개인이 심층 조사를 위하여 인식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국경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필요한 이행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특히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의 연계는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조회 대상자의 동일성 확인 및 오인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형사사범정보시스템과의 연계는 범죄경력자료 및 형사사범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정상 정보교환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복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조회·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 제공의 신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이 주민등록정보 및 형사사범정보 등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여러 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집중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 유출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특히 협정에 따른 정보교환이 외국 정부와의 이행정보 교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스템 연계 범위의 적정성, 접근권한 관리, 이용기록 보관·점검 및 정보 유출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 및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 정보 제공 절차 등(안 제9조·제12조)

안 제9조는 협정상 지문정보 자동조회 절차와 추가 정보 제공 절차를 국내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이행정보의 제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국가안전보장, 형사절차 보호 및 제3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9조(이행정보의 제공) ① 우리나라 국가담당자는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상대국 국가담당자가 특정 개인의 이행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보유 여부와 제5조에 따른 제공범위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 국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상대국 국가담당자가 특정 개인의 이행정보를 요청할 시 그 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가 없음을 상대국 국가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정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상대국 국가담당자가 특정 개인에 대한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정보(이하 “상세정보”라고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그 상세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서면 또는 그 밖의 비전자적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및 요청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 제공의 제한) ① 경찰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수사 또는 기소 등 형사절차의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자의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보의 오류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판별이 곤란한 경우 5.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정보의 제공 또는 공유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6. 그 밖에 협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정보의 제공·공유의 거부 또는 제한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CSC 협정은 지문정보를 활용한 자동조회 단계와 추가 정보 제공 단계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바²⁴⁾, 제정안 역시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한 1차 정보 제공 절차와 추가 정보 요청에 따른 상세정보 제공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행정정보 교환 구조 >

법률안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협정	제4조제1항, 제6조	-
방식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 기반	서면 또는 비전자적 방법
제공 정보	1. 인적사항(제2조제2호 가목) 2. 지문정보(제2조제2호 나목) 3. 범죄경력자료(제2조제2호 다목)	형사사법정보(제2조제2호 라목)

구체적으로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상대국 국가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정보의 보유 여부 및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추가적인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 등 상세정보를 별도의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4) ▶ 협정 제4조(지문 정보의 자동 조회)

①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제7조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담당자들이 지문 정보를 비교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자동 조회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제3조에 언급된 참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협정 제6조(추가적인 개인 정보와 그 밖의 정보의 제공)

만일 제4조에 언급된 절차가 지문 정보 간의 일치를 나타내는 경우, 이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참고 정보와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추가적인 개인 정보와 그 밖의 정보의 제공은 사법 공조 규칙들을 포함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된다.

이와 같이 제정안은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정보교환 절차를 단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는 신속한 동일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별도의 요청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제공에 일정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러한 통제 장치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조회 단계에 대한 통제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임.

안 제5조는 제공 가능한 이행정보의 범위를 일정한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상대국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개인의 정보를 검색·확인하는 조회 단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님.

안 제9조에 따르면 상대국 국가담당자가 특정 개인의 이행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가담당자는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의 보유 여부 및 제5조에 따른 제공 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정안은 이러한 조회가 어떠한 목적과 요건에 따라 허용되는지, 조회 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특히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은 상대국이 송부한 지문정보를 국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가 제5조에 따른

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실제 정보 제공 여부와는 별개로 조회 단계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검색 및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제5조에 따른 정보 제공 범위의 제한만으로는 조회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고, 조회 대상자의 범위가 사실상 광범위하게 설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더욱이 제정안은 상대국이 어떠한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조회 요청 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회 권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거나 운영 과정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협정 제4조제2항²⁵⁾은 자동조회 권한을 범죄의 예방·수사 등 형사사법 목적으로 한정하고, 개별 사안 및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합치되도록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에서도 이러한 협정상 제한이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조회 대상자의 범위, 조회 목적 및 요청의 필요성·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협정 제4조에서 자동조회

25) ▶ 협정 제4조(지문 정보의 자동 조회)

1.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제7조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담당자들이 지문정보를 비교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자동 조회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제3조에 언급된 참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조회 권한은 오직 개별 사안과 당사국의 국내법에 합치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조회 권한은 오직 형사 사법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추가 정보가 요구되는 개인이 심층 조사를 위하여 인식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국경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권한의 목적과 행사 범위를 이미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내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임.

둘째, 국가담당자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 및 통제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담당자가 경찰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상대국 국가담당자의 요청에 따른 이행정보의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 제공의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권한은 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국가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업무의 범위와 경찰청장의 직접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담당자는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상대국 국가담당자의 요청을 확인하고 이행정보의 보유 여부 및 제공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위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될 경우 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별 요청의 적정성이나 협정 및 국내법상 제공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또한 안 제12조에 따른 정보 제공의 거부 또는 제한 여부는 경찰청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담당자가 정보 제공 과정에서 제공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 기준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가담당자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와 정보 제공 업무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확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정보 제공 내역에 대한 기록·관리 및 사후 점검 등 권한 위임에 따른 통제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보 제공 과정에서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바. 위험인물 정보 제공 특례(안 제10조)

안 제10조는 테러행위 등 중대한 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안 제5조의 정보 제공 범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일정한 위험인물에 관한 이행정보를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조(테러행위 등 위험인물에 대한 이행정보의 공유)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담당자는 협정에 따라 테러 관련 행위 등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테러행위등 위험인물”라 한다)에 관한 이행정보를 상대국 국가담당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 1. 테러나 테러 관련 행위를 계획·준비하거나 실행하였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 ② 테러행위등 위험인물의 선정기준과 공유하는 이행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는 테러행위 등 중대한 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 제5조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 요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위험인물에 관한 이행정보를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먼저 PCSC 협정 제8조²⁶⁾는 테러행위를 포함한 범죄의 예방과 대처를

26) ▶ 협정 제8조(테러 행위를 포함한 범죄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정보 제공)

① 테러 행위를 포함한 범죄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개별 사안에 있어 특정 정황상 정보 대상을 아래와 같다고 믿을 만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위하여 특정 개인이 범죄 또는 테러 관련 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의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적 대응을 6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러한 협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안 제10조는 형이 확정된 범죄자의 정보를 전제로 하는 안 제5조와 달리 사전적 위험성 판단에 기초한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국제테러나 조직범죄의 경우 범행 발생 이후에는 피해 회복이 곤란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위험 징후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안 제10조는 범죄의 실행 또는 형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적 위험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적용 대상의 범위 및 위험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안 제10조제1항제1호는 테러 또는 테러 관련 행위를 ‘계획·

의 담당자들에게 제2항에 명시된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범죄 행위를 범하려 하거나 이미 범하였거나, 또는 조직 범죄 단체나 집단에 가담한 자
나. 제공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로서 상대국에서 테러나 테러 관련 행위 또는 상대국에서 테러 단체나 협회와 관련된 행위를 범하려 하거나 이미 범한 자, 또는
다. 상대국에서 테러 또는 테러 관련 범죄 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나호에 언급된 범죄 행위를 범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준비'한 사람까지 정보 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 또는 준비 단계는 범죄 실행 이전의 단계로서 그 범위가 비교적 넓고 추상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범죄 실행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없이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도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적 위험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같은 호의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표현 역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해당 문언은 훈련의 내용이나 목적, 행위자의 인식 여부 등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단체의 성격이나 범죄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 또는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까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정보 제공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행위자의 인식이나 범죄 목적과의 관련성 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정보 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 비하여 조직성 및 계속성에 관한 요건이 완화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²⁷⁾ 이에 따라 정보 제공 대상이 당초 협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안 제10조는 테러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사전적 위험성 판단에 기초하여 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조인 만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바, 정보 제공 대상 및 요건을 명확히 하여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적용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계획·준비’ 단계의 판단 기준, ‘훈련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 및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개념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인식·목적 또는 범죄 실행과의 관련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27) 참고로 대법원은 범죄단체를 “범죄를 수행할 공동 목적 아래 일정한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 범죄집단을 “그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다수인이 결합한 조직적 집단”으로 판시한 바 있는바(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97 판결),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사. 이행정보 처리의 기록·보존 등(안 제13조~제15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협정에 따라 수집·관리되는 이행정보의 기록·보존, 안전성 확보 및 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행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3조(이행정보 처리의 기록·보존 등) ① 경찰청장은 협정에 따른 이행정보의 수집·제공·공유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따른 이행정보조회시스템에 입력·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정보의 수집·제공·공유 등 처리 상황의 기록 방법·범위, 보존기간, 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이행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이행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청장은 이행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협정에 따라 이행정보의 제공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의 파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행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이행정보를 취급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이를 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먼저 안 제13조는 이행정보의 수집·제공·공유 등 처리 전 과정에 대하여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록 방법·범위, 보존기간 및 관리·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협정 제12조가 정보의 전송·접수에 관한 기록의 유지 및 보존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행정보의 처리 이력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보 처리 과정의 추적 및 사후 점검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기록 대상 및 보존기간은 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바, 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협정은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2년간의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 대상 및 보존기간에 관한 기본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⁸⁾

다음으로 안 제14조는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정보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이행정보가 범죄경력자료 및 형사사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28) 협정 제12조제2항은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공된 정보, 제공 일자 및 수령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14조제3항은 제공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 달성’의 의미 및 판단 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정보 제공 직후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정보가 활용되는 수사 또는 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정보의 과도한 장기 보존 또는 조기 파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행정보 처리의 기록·보존 등 체계 ?

법률안	제13조	제14조
협정	제12조 ²⁹⁾	
정보	이행정보 처리(로그) 기록	사용한 이행정보 자체
보관	대통령령 위임	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이행정보를 취급하거나 알게 된 자의 누설·위조·변조·훼손 또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의 오·남용을

29) ▶ 협정 제12조(문서화)

- ①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된 정보의 전송과 접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하여 사용된다.
 - 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보 보호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
 - 나. 각 당사국이 제11조(정보의 수정, 차단 및 삭제)와 제15조(통지)에 따라 부여 받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 다. 정보 보안의 보장을 위한 목적
- ② 그 기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자료
 - 나. 제공 날짜 및
 - 다. 그 정보가 다른 단체에 제공될 경우, 그 정보의 접수자
- ③ 기록된 정보는 부적절한 사용과 다른 형태의 부적당한 사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2년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보존 기간 후에는 적용 가능한 정보 보호 및 보존 규칙을 포함한 자국의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록된 정보는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방지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적 규율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참고로,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른 유출 및 목적 외 이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이전 내역의 기록·보관, 이전받은 기관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재이전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달성 후 삭제·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이와 같은 현행 대통령령의 규정을 참고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정보 처리 주체의 관리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제정안은 이행정보의 국외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정정·삭제 요구권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와의 관계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안 제10조에 따른 위험인물 정보의 경우 형의 확정 없이 사전적

위험성 판단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정보 제공 사실이나 그 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처럼 정보 제공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구제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정보 제공 사실의 통지,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가 이행정보의 제공 및 처리에 있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관계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국외 이전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³⁰⁾하고 있는바, 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을 보완하여 현행 대통령령상의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가 제정안에 따른 이행정보의 제공 및 처리에도 적용되도록 하거나, 정보 제공 사실의 통지, 열람, 정정·삭제 요구 및 그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제정안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0) 각주 17 참고

아. 안 제17조의 신설 필요성 및 협조 의무 규정의 중복성 검토
(안 제6조제2항 및 제17조)

안 제6조제2항은 경찰청장이 이행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정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이행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청장은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 정보를 수집·관리 및 이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이행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이행정보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경찰청장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안 제6조제2항은 경찰청장이 이행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안 제17조는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7조는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 필요성 및 독자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우선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경찰청이 다른 기관에 요청하게 되는 협조의 내용은 대부분 이행정보의 제공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안 제6조제2항은 이행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행정기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확보는 원칙적으로 안 제6조제2항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 제17조가 어떠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또한 안 제17조는 협조의 내용으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만약 지원이 자료 제공 외에 인력 지원, 장비 제공 또는 예산 협조 등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 협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제정안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반면 지원이 사실상 자료 제공이나 정보 공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안 제6조제2항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안 제17조는 안 제6조제2항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원의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별도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안 제17조를 별도로 둘 필요성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협조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안 제6조와의 관계 및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자. 협정 이행 관련 보충규정(안 제18조)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충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8조(협정 이행)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8조는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충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은 이행정보의 범위, 정보 제공 절차, 정보 제공 제한 사유, 기록·보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협정 이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이미 개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당수 조항에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제18조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까지 대통령령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위임은 개별 조항별로 위임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안 제18조와 같은 포괄적 보충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제정안의 각 조문에서 이미 개별적인 위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8조를 별도로 둘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조항에서 위임 범위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입법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차. 벌칙 조항(안 제20조)

안 제20조는 이행정보의 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공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0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이행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행정보는 지문정보, 범죄경력자료 및 형사사법정보 등 고도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협정에 따라 상대국과의 정보교환 및 국외 이전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유출 또는 오·남용이 발생할 경우 개인의 권익 침해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비밀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벌칙 규정의 적용 범위와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먼저 안 제20조는 제15조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14조는 이행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제정안은 별도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행정보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형사사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더라도 제공 목적을 벗어나 이용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협정상 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상대국의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음. 특히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는 이행정보의 적법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통제 장치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벌칙 수준과 관련하여, 동 조항은 제15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과 동일한 수준³¹⁾으로서, 이행정보가 지문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고도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마지막으로 처벌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안 제15조는 비밀유지 의무의 적용 대상을 “이 법에 따라 이행정보를 취급하거나 알게 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직무 또는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우연히 정보를 인지하게 된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3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러나 형사처벌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밀누설죄나 개인정보 관련 범죄 역시 직무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전제로 규율되고 있음.³²⁾³³⁾ 이러한 점에서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의 적용 대상을 직무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행정보를 취급하거나 알게 된 사람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344

32)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은 처벌 대상을 직무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 한정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과 처벌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음.

33)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판시 함.(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참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비자면제프로그램)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ENHANCING COOPERATION TO PREVENT AND COMBAT CRIME (VWP)

[발효일 2008.12.29]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제1930호, 2009.01.15 제정]

제1조(정의) 이 협정의 목적 상 1. "범죄"란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 또는 그보다 중한 형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형사 사법 목적"이란 형사 사법의 집행 작용으로 규정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 피고인이나 범죄자의 형사상 신원 확인, 소재 파악, 체포, 구금, 재판 전 석방, 재판 후 석방, 기소, 판결, 교정 감독 또는 갇혀 활동

3. "참고 정보"란 각국이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의 목적으로 만든 신원 확인 시스템에서 개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4. "개인 정보"란 확인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연인(정보 대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5.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기록, 구성, 저장, 각색 또는 변경, 분류, 복구, 참고, 사용, 공개, 전파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결합 또는 정렬, 차단 또는 말소나 파기를 통한 삭제와 같이 자동화된 방식이든 아니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행해지는 모든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2조(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대처에 있어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지문 정보)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범죄 행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국가 자동 지문 확인 시스템용 파일로부터 참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 정보는 지문 정보와 참조 사항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지문 정보의 자동 조회) 1.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제7조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담당자들이 지문정보를 비교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자동 조회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제3조에 언급된 참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조회 권한은 오직 개별 사안과 당사국의 국내법에 합치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조회 권한은 오직 형사 사법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추가 정보가 요구되는 개인이 심층 조사를 위하여 인식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국경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제5조(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한 대체적 조회 수단)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자동 지문 확인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부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은 개인과 추가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명확한 일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식별 정보를 이용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회 권한은 제4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명확한 일치는 제6조에 규정된 추가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지문 정보의 명확한 일치와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6조(추가적인 개인 정보와 그 밖의 정보의 제공) 만일 제4조에 언급된 절차가 지문 정보 간의 일치를 나타내는 경우,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 정보와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추가적인 개인 정보와 그 밖의 정보의 제공은 사법 공조 규칙들을 포함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된다.

제7조(국가 담당자들) 1. 제4조와 제5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정보교환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담당자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자의 권한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규율된다.

2.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조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사국 간 실무급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진다.

3. 당사국은 이 협정의 다음 사항들의 이행에 관하여 협의한다.

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조회에 대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세부사항, 그리고

나. 부속서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 공개될 범죄의 특정

제8조(테러 행위를 포함한 범죄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정보 제공) 1. 테러 행위를 포함한 범죄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개별 사안에 있어 특정 정황상 정보 대상을 아래와 같다고 믿을 만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담당자들에게 제2항에 명시된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범죄 행위를 범하려 하거나 이미 범하였거나, 또는 조직 범죄 단체나 집단에 가담한 자

나. 제공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로서 상대국에서 테러나 테러 관련 행위 또는 상대국에서 테러 단체나 협회와 관련된 행위를 범하려 하거나 이미 범한 자, 또는

다. 상대국에서 테러 또는 테러 관련 범죄 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나호에 언급된 범죄 행위를 범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2. 제공될 개인 정보는 가능한 경우 성, 이름, 종전 이름, 다른 이름, 별명, 철자를 바꾼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현재와 과거 국적, 여권 번호, 그 밖의 신원 확인 서류의 번호, 지문 정보와 유죄 판결 또는 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공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접수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접수 당사국이 그러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 접수 당사국은 그러한 조건에 구속된다.

4. 제공 당사국은 개인 정보의 처리를 위한 접수 당사국의 법률상의 기준에 따른 일반적 제한들을 정보 제공에 대한 제3항에 따른 조건으로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5. 제2항에 언급된 개인 정보에 추가하여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관련된 비개인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 정보 또는 그 밖의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 담당자들과 교환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담당자들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 담당자들의 권한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규율된다.

제9조(사생활 및 정보 보호) 1. 당사국은 상대국으로부터 획득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과 처리가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식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과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제공된 개인 정보는 전달된 특정 목적과 관련하여 상당하고 적절한 것임을 보장할 것
나. 이 협정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제공되고 추가로 처리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간만 개인 정보를 보유할 것

다. 부정확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 정보는 적절한 수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접수 당사국의 주의를 적기에 환기시킬 것을 보장할 것

3. 이 협정은 어떠한 증거를 취득, 은폐, 배제하거나 개인 정보의 공유를 방해하는 권리를 포함한 사인으로서의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협정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정보 처리의 제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가. 범죄 수사의 목적

나. 자국의 공공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다. 가호에 규정된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형사적 사법 혹은 행정 절차상, 또는

라.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의 사전 동의하에서의 그 밖의 목적

2.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제공 받은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의 동의와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제3국, 국제기구 또는 민간단체에 전달할 수 없다.

제11조(정보의 수정, 차단 및 삭제) 1. 이 협정에 따라 받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또는 그 정보의 수집이나 추가 처리가 이 협정 혹은 제공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규칙들에 위반되는 경우, 접수 당사국은 제공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정보를 국내법에 따라 수정, 차단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제공 당사국으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접수 당사국이 인지하게 된 경우, 그러한 정보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에는 특히 그러한 정보의 보충, 삭제 또는 수정이 포함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하였거나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받은 기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또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임을 인지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화)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된 정보의 전송과 접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하여 사용된다.

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보 보호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
나. 각 당사국이 제11조와 제15조에 따라 부여 받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다. 정보 보안의 보장을 위한 목적

2. 그 기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자료

나. 제공 날짜 및

다. 그 정보가 다른 단체에 제공될 경우, 그 정보의 접수자

3. 기록된 정보는 부적절한 사용과 다른 형태의 부적당한 사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2년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보존 기간 후에는 적용 가능한 정보 보호 및 보존 규칙을 포함한 자국의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록된 정보는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제13조(정보 보안) 당사국은 우발적이거나 불법적인 파기, 우발적 분실이나 승인되지 않은 공개, 변경, 접근 또는 승인되지 않은 그 밖의 방식의 처리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조치와 조직적인 제도가 활용될 것임을 보장한다. 당사국은 특히 오직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만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제14조(정보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1.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정보 대상에게 처리의 목적 및 정보 관리자의 신원, 접수자 또는 접수자의 범주, 본인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권리 및 수정할 권리의 존재에 관한 정보 그리고 정보 대상에 관하여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가 처리되는 목적과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된 정보 처리 작업의 법적 근거, 정보 저장을 위한 제한 시간 및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추가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각자의 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그러한 정보는 그 정보 제공이 다음의 사항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당사국 각자의 법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

가. 처리의 목적

나.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미합중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수사 또는 기소, 또는

다. 제3자의 권리와 자유

제15조(통지) 접수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와 얻어진 결과를 제공 당사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접수 당사국은 제공 당사국에게 시기적절하게 답변을 통보할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협정과 관계) 이 협정의 어느 것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어떠한 조약의 규정이나 다른 협정, 실행 중인 법률의 집행 관계 또는 국내법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7조(협의)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자국의 당국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 당사국은 다른 방식에 동의할 수 있다.

제19조(협정의 종료)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규정들은 그러한 종료 전에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20조(개정) 1.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과 관련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이 협정은 언제든지 당사국의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21조(발효) 부속서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협정은 당사국이 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가리키는 당사국 간의 외교 각서의 교환이 완료되는 나중의 각서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1월 7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이 협정의 목적 상 공개될 범죄는, 법령에 따라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 또는 미수 행위를 포함한다.

1. 사람에 대한 중대범죄

- 집단살해, 고문, 살인, 치사 및 이와 연관된 범죄, 인신매매, 강간 및 그 밖의 성범죄, 외국인 밀입국, 채무노예, 노예소유, 강제노력, 어린이에 대한 범죄, 유괴 또는 불법감금, 인질강도, 가정폭력, 성매매 그리고 종교자유의 침해

2. 국가에 대한 중대범죄

- 테러행위 및 이와 연관된 범죄,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리스트 조직에의 물질적 원조, 테러위협, 파괴행위, 반역 및 내란, 간첩활동, 공무집행방해, 무기거래 및 사법방해

3. 중대무기범죄

- 총기류 범죄(밀매를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파괴장치 또는 폭발물질과 관련된 범죄

4. 절도/사기와 관련된 중대범죄

- 주거침입강도, 금품강요, 위증, 자금세탁, 부정수표 유통, 강도, 무장강도 및 위조

5. 통제물질과 관련된 중대범죄

6. 재산에 대한 중대범죄

- 방화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포함된 다음범죄들의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폭행, 상해, 협박, 주거침입, 뇌물, 횡령, 공갈, 사기관련 범죄(위조, 위조문서의 행사, 우편 사기, 신용카드 및 여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문서의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사용), 탈세, 절도 및 재물손괴